

울산지방법원 2023. 3. 17 선고 2021가단599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나12104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3. 3. 17 선고 2021가단5996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

담당변호사 구언수, 박현갑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

변론종결 2023. 1. 13.

판결선고 2023. 3. 17.

주문

1.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723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81㎡ 내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, 위 토지 81㎡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와 원고의 처 D은 2021. 2. 4. 울산 울주군 C 대 723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에 관하여 각 1/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E 대 191㎡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(이하 위 건물을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다.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81㎡ 내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블록조 담장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(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축물에 의하여 침범된 부분을 ‘이 사건 침범 부분’이라고 한다).

[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건축된 건물 및 담장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분에 건축된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, 이

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의 요지

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을 20년간 평온,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,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.

나. 판단

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침범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대산

별지